「평창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0월 27일, 함명섭의원외 5명

○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9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11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함명섭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「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

○ 특히,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,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,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 일정, 집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명 변경

- 「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
⇒「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」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～안 제3조)

○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(안 제4조～안 제5조)

-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

- 정례회 등 회기 운영

· 정례회 : 45일(제1차 정례회 - 15일, 제2차 정례회- 30일)

· 임시회 : 합계 55일 이내

○ 집회일 및 집회시기 변경, 처리안건 등(안 제6조～안 제8조)

- 정례회의 집회일

· 제1차 정례회: 6월 10일

· 제2차 정례회: 11월 25일

- 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함.

-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 처리안건 등 각각 규정

○ 기본일정 및 집회공고 등(안 제9조～안 제10조)

-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을 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제44조・제45조・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, 안 제6조에서

제8조까지는 집회일 및 집회시기 변경, 처리안건 등,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기본일정 및 집회공고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,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며,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정례회 등”이란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(이하 “정례회”라 한다)와 임시회(이하 “임시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연간 회의 총일수)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.

②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

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.

③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.

제5조(회기) ① 의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(이하 “회기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.

1. 정례회: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
   가. 제1차 정례회: 15일
   나. 제2차 정례회: 30일
2. 임시회: 합계 55일 이내

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로 결정한다.

제6조(집회일)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 다만,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: 6월 10일
2. 제2차 정례회: 11월 25일

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·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5월·6월이나 11월·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 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,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7조(집회시기 변경) ① 의장은 영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·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·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.

제8조(처리안건 등)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영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·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.

②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「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른다.

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,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·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.

제9조(기본일정) ①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(이하 “기본일정”이라 한다)을 정한다.

② 기본일정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해야 하며,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말까지 정한다.

③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평창군수(제10조에서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알리고, 의회 인터넷홈페이

지(제10조에서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0조(집회공고 등) ①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,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은 생략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법 제45조제2항 본문에 따른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공고를 해야 한다.

제11조(서식 등)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·방법, 소집·집회공고문,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운영·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의장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(서식 등을 포함한다)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2차 정례회기간”을 “제1차 정례회기간”으로 한다.